

# 연구윤리위원회 규정

2023. 03. 23. 제정  
2026. 04. 04. 개정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와 학회가 발행하는 「핵의학기술」(이하 “학술지”라 한다)의 연구·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위원회는 학회의 회원 및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의 연구·출판윤리 사항을 관할하며, 심사위원·편집위원 및 그 밖에 학술지의 심사·편집·출판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.

## 제2조 (구성 및 역할)

-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, 간사 1명,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학회 통합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③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, 학회와 학술지의 연구·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.
- ⑤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소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3명 이내로 구성하며,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## 제3조 (임기)

위원장,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4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윤리·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학회와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감시·관리 체계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
3.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4.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문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6.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제5조 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또는 연구윤리 관련 사안이 접수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연구윤리 관련 사안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한 의결권 있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나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- 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판정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이미 확인된 사실 외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유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
#### 제6조 (회의록 작성 및 보고)

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중요한 의결사항은 학회 통합회장에게 보고한다.

1. 회의개회 일시
2. 회의장소
3. 출석위원·결석위원의 성명
4. 경과보고, 상정안건, 의결사항 등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# 제7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조사·심의·의결 및 재심의 절차는 「핵의 학기술」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며,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.